

김 미 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각 부서에 대해

1. 부서별 사업에 따른 위원회 관련

1-1. 부서별 사업에 따른 위원회 목록

1-2. 1-1목록에 따른 위원프로필 (임기포함)

1-3. 2017.1.1.부터 8.31까지 개최된 회의에 대해 차수별
참여위원,안건,결과,소요경비,남은차수 목록

2. 부서 사업별 법률자문 목록

□ 위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서별 사업에 따른 위원회 관련 : 해당사항 없음.

2. 부서 사업별 법률자문 목록

- 자 문 처: 김태운 변호사 사무실

- 자문건수: 총 50건

연번	부서명	해당사업명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결과 및 진행사항
1	기획 경영팀	DDP 위수탁 운영	2017. 3.2.	DDP위수탁협약서 내용 검토	협약서 내용 검토 후 문제 사항 없다 답변
2		이사회 운영	2017. 3.10.	비상임이사 선출 건과 관 련한 법적문제 여부	비상임이사 모집 진행 중 사임 예정이었던 이사가 사임 표명을 취소하여 최 종 선출 인원이 변경되었 을 경우(8→7명), 공고 1일 차이므로 내부적으로 변경 사유 근거 기안 후 수정
3			2017. 8.1.	재단의 비상임감사 소속 회계법인이 재단의 외부 회계감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이행 충돌 여부	이행 충돌의 소지가 있으 므로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변경하거나 비상임 감사가 사임함으로써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답변

연번	부서명	해당사업명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결과 및 진행사항
4	기획 경영팀	이사회 운영	2017. 7.7.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운 영내규에 따라 동일한 임 원추천위원회로 복수의 임 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답변
5			2017. 4.3.	근로자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노조 추천을 표방하는 경 우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제재 를 가할 수 없다 답변
6		기타	2017. 8.1.	퇴사한 재단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재단의 책임 여부	재단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 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이지만, 민원인의 구체적 소제기가 있으면 그에 따 른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답변
7	홍보마 케팅팀	DDP 대관운영	2017. 1.10.	대관료 미수금 회수에 관 한 자문요청	미수금 독촉과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지급명령 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서면회신
8			2017. 1.11.	케이터링 운영계약서' 제 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기간이 2년 자동 연장되 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따라 2년 이내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구두회신
9			2017. 2.7.	케이터링 운영 연장계약서 (안) 내용 검토	특별히 문제될 만한 조항 이 없다는 서면회신 (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하고, 내용이 바뀌지 않으므로 기존 계 약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회신 받음)
10			2017. 2.20.	장폴고티에전 대관료 1억 원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 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	신청서 문구 일부 오기 보 정 요청('이 사건 신청서 부분'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으로 문구 정정)

연번	부서명	해당사업명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결과 및 진행사항
11	홍보마케팅팀	DDP 대관운영	2017. 3.17.	지급명령 신청 중 대관료 미지급금 일부 지급에 따른 대응방안	일부 변제의 경우 이자,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
12			2017. 4.19.	대관료 일부 금원 미지급에 따른 대응방안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13			2017. 7.25.	에듀씨에스 등을 상대로 한 재산명시 신청사건과 관련한 문의	채무자들이 제출한 재산목록 검토 후 추가 대응방안 협의
14	디자인출판팀	단행본출간	2017. 6.8.	을지로라이트웨이 2017 사업 중 대행사의 판매용 단행본 제작과 관련 계약 자문	수익발생시점이 사업 대행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이므로 용역계약서 등에 특약사항으로 수익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라 답변
15	패션 워크팀	서울 패션워크 개최	2017. 3.3~20.	서울패션워크 공식 협찬 계약서 검토 요청	내용 일부 수정 후 법적 문제없음 확인
16			2017. 3.17.	서울패션워크 명칭을 협찬 계약 없이 기업홍보에 사용할 경우의 대응방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부정경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협찬 계약 없이 서울패션워크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기업에 요청
17			2017. 3.20.	동아TV와의 업무협약서 검토 요청	협약서 내용 검토 후 일부 조항 문언 수정
18			2017. 3.22.	서울패션워크 협찬사의 사정으로 협찬금액 중 일부만 협찬계약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를 원함에 따른 재단의 대응방안	사용처를 명시한 기부약정서를 받는 방법 강구
19			2017. 3.22.	협찬사가 기부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대응방안	재단 내부의 논의를 거쳐 협찬사의 요구를 수용할 방안 강구

연번	부서명	해당사업명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결과 및 진행사항
20	패션 워크팀	서울 패션워크 개최	2017. 3.24.	보그 드론촬영에 따른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시한 문언에 대한 자문 및 공문 검토	공문 내용 검토 및 문언 제안
21			2017. 5.16.	서울패션워크의 글로벌멘토에게 지급할 대가를 멘토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 기관에 기부할 경우의 법적문제	기존 계약서에 이미 있던 내용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서면 회신
22			2017. 6.2.	서울패션워크 총감독 재계약 관련하여 갱신일로부터 17년 말일까지 재계약하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자동 연장 가능 여부 문의	계약서 내용 확인 후 일부 문구 수정 외엔 문제 사항 없다 답변
23			2017. 8.17.	서울패션워크 티켓이 네이버 중고카페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	재단 명의로 거래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네이버 측에 송부하도록 권유
24			2017. 8.24.	서울패션워크 불법거래에 대한 네이버 측의 답변에 따른 대응방안	해당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나, 그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처분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
25	패션 산업팀	동대문패션 산업육성	2017. 6.7.	서울시설공단과의 업무협력협약서 검토	협약서 내용 검토 후 조항(제3조) 일부 수정
26	의류 산업팀	의류 제조산업 육성사업	2017. 4.25.	지속가능 패션쇼 제작을 위한 협약서 검토	협약서 내용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회신
27			2017. 5.2.	해외박람회(WHO's NEXT 수주박람회) 지원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다는 내용 회신
28			2017. 6.17.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공간조성을 함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무상지원과 성장기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회신

연번	부서명	해당사업명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결과 및 진행사항	
29	의류 산업팀	기타	2017. 6.19.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입찰과정에서 서울시와 재단의 사문서위조 등 관련 대응방안	서울시 해명자료대로 재단이나 서울시가 사문서위조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두회신	
30			2017. 8.22.	문서에 글자체를 무단 사용한 것에 따른 대응방안	해당 디자인서체는 재단이 기존에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서체로 판명	
31	콘텐츠 기획팀	서울 새활용 플라자 개관	2017. 5.6.	삼성전자와의 업무협약서 검토	업무협약서 조항 중 역할 및 분담에 대한 조항과 지식재산권 결과물 사용하고 자 할 시 'Designed by SADI & Supported by SDF' 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조정 완료	
32			2017. 5.31.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행사, 홍보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행사업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및 제출서류 위변조에 따른 대응방안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협상을 중단한 경우 재단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결렬을 통보하고, 제출서류의 위변조 내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통보를 할 수도 있다 답변	
33			2017. 6.2.	2017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행사, 홍보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행사업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대응방안	대면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대응방안 협의 후, 재단의 입찰공고시 제시된 제안요청서 내용을 세부산출내역 의거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않아 협상 포기	
34			공간마 케팅팀	2017. 5.19.	스튜디오(공방) 입주계약서 검토 요청	계약서 내용 검토 후 일부 문구 수정 외에 법적 문제 없음 확인
35				2017. 5.29.	재사용작업장 입주 계약서 검토 요청	계약서 내용 검토 후 법적 이슈사항 없음 확인
36	2017. 8.10.	플라자 내 편의점과 자판기 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여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가능 여부 판단		

연번	부서명	해당사업명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결과 및 진행사항
37	공간마케팅팀	서울 새활용 플라자 개관	2017. 6.14.	플라자 사업과 관련하여 테라사이클 기업과의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공동수익사업 진행여부 결정하라는 답변
38			2017. 6.21.		간송문화전의 경우처럼 업무협력을 통한 공동의 브랜드 상품개발은 가능할 것이지만, 재단과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서울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내지 동의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답변
39	디자인사업팀	디자이너스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2017. 7.15.	DDP 살림터 2층 코워킹스페이스 위수탁 운영계약서 검토 및 작성	3차례 대면상담을 통하여 기존 위수탁 운영계약서 수정 및 특이사항을 반영한 계약서 작성 완료
40	전시사업팀	서울 디자인위크 개최	2017. 4.3~10.	서울디자인위크 2017' 운영사업자 선정 시 입찰서류의 흠결이 보완 가능한 경우 입찰자격을 허용할 수 있는가 자문	유선상담 및 대면상담 후 법적 문제없음 확인
		전시기획 및 운영	2017. 7.5.	루이지폴라니전 계약서 검토	대면상담을 통한 계약서 수정안 반영
41	디자인공예산업팀	디자인상품 브랜드 강화	2017. 8.1.	DDP디자인카페 임차인의 해지의사에 따른 재단의 대응방안	임차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를 하게 하되 해지일까지의 보증금을 일할 계산하고, 보증금은 물취하는 것으로 대응하라 답변
42	운영팀	DDP 공간서비스	2017. 4.26.	DDP 솔루션 관리업체의 항의에 따른 재단의 대응방안	경위 파악 후 대응방안 수립하라 답변
43			2017. 7.3.	IoT협력사업에 관한 제휴 계약서 검토	계약서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다는 서면회신에 따라 계약 진행
44			2017. 8.8.	DDP내 미디어 장애 발생에 따른 시공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미디어 유지보수기간 만료로 시공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불가하다 답변

연번	부서명	해당사업명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결과 및 진행사항
45	시설 관리팀	시설안전 안심관리	2017. 3.24.	DDP LED장미정원 리뉴얼 사업 중 저작권에 관한 자문	추천에 따라 저작권 전문 변호사, 변리사에게 추가로 자문 받고 사업 완료
46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사무국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개최	2017. 6.23.	2017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참가 동의서 검토	재단이 지원하는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언을 내용에 포함
47			2017. 5.23.	인코센터와의 업무협력 협약서 검토	협약서 검토 결과 제4조 (판매 및 수익처리) 일부 수정
48			2017. 7.15.	관할법원과 원상복구 조항 에 대한 수정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49	감사팀	민원 및 소송	2017. 2.22.	재단의 DDP 디자인장터 운영 위탁을 맡은 GS리테 일과 계약한 장터 업체들이 입주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GS리테일에서 기존 계약사항을 이유로 거절하 자 재단에 진정	계약 과정 전체를 살펴보 았을 때 공정성에 위배되 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 다고 법률대리인에게 공문 발송 및 민원 대응 완료
50			2017. 4. 25.	판다코리아 소송비용 반환 확정에 따른 재단의 향후 대응방안	소송승소에 따른 확정비용 청구에 대한 상대방 미지 급시의 대응방안으로 지급 명령 대안 제시 후 비용 입금 완료

작성 자	기관명	직위	성명
	서울디자인재단	기획경영팀장	이 소 미
	☎2096-0071	선 임	김 유 림
	작성일 : 2017. 09. 11		